

2021년도 제27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1. 10. 13.(수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최승수(분과위원장), 김경숙, 노정동, 박성호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1-266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강나래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3,043건(안건번호 제2021-138660호~140485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1-138660호(순번 1번)는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고 있는 사안으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 방조 행위에 해당하는 점, 합법 시장에 미칠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이 인정되어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1-138661호~138691호(순번 2번~32번)는 ■■■■ ■■■에서 불법복제물을 무단으로 전송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1-138692호~138696호(순번 33번~37번)는 블로그 및 웹하드 사이트에서 불법복제물을 제공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3,004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 5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URL 정보 총 356개의 URL 정보에 관한 '구글'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 (안건번호 제2021-14487호~14842호)
- 회의결과: 회의 시점 기준 접속이 불가하여 불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1개에 대한 111개의 URL 정보를 제외하고, 접속 가능한 4개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245개의 URL 정보에 관하여 검색제한 조치를 요청하기로 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27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1-266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강나래 전문위원: 제1호 안건 회의록과 관련하여 5쪽의 저작물명, 저작물 회차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B 위원: 제1호 안건의 해당 부분은 민원인 신고 건으로 비식별 처리함이 타당함. 나머지 부분은 전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C, A,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 저작물 회차 등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바 있음.

위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게시자는 오로지 불법복제물 전송 목적으로 생성된 웹사이트에서 영리적·계속적으로 불법복제물을 게시하고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 방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에 해당하여 시정권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

한편 심의위원회는 원천게시물이 국내 서버에 저장된 경우에는 원천게시물에 대하여, 해외 서버에 저장된 경우에는 링크게시물에 대하여 시정권고하고 있음. 사안의 경우 원천게시물이 해외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바, 링크게시물인 심의대상 게시물을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종합하면, 링크를 통한 불법복제물 전송은 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조에 해당하므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를 전송 중인 게시물에 해당하여 시정권고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점, 현재 합법 시장에서 판매 중인 저작물을 이용 중인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C 위원: 공지사항 중 '■■■■■ ■■■ ■■■ ■■■■■■■■■■■■' 게시물을 살펴보면, "■■■ ■■■■■■■■ ■■■■■■■■■■■■"고 안내하고 있

대가로, 일종의 구독 내지 이용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원천게시물로 접근하기 위하여 다수의 광고창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광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됨. 해당 사이트 개설일은 언제인지?

- 강나래 전문위원: (해당 게시물을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해당 사이트에 최초로 음원이 게시된 일자는 ■■■■■■ ■■■ ■■■이므로, 그 무렵에 개설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 D 위원: 다수의 광고 팝업을 거쳐야만 원천게시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관계의 특이점이 있으나, 결국 링크를 통한 불법복제물 전송이 논점이 되는 사안임. 따라서 링크게시물에 대한 우리 심의위원회의 합치된 기준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임.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C, B, A 위원: 이견 없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은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번~32번은 3명의 민원인이 실명으로 신고한 건임. ■■■■ ■■■에서 다수의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한 사안임. 총 33개 게시물임.
(순번 2번 심의대상 게시물을 재생하여 보여주면서)해당 저작물의

전체 분량을 제공하고 있음.

순번 2번~24번, 27번~31번의 경우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순번 25번~26번 심의대상 게시물을 재생하여 보여주면서) 해당 저작물의 전반부 약 59분을 제공 중임. 후반부 48분을 추가로 제공 중인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함.

심의대상 게시물이 원저작물을 편집하여 게시하였다고 하여도 새로운 창작성이 가해졌다고 볼만한 사정은 특별히 없으므로,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 및 전송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다만, 저작권재산권 제한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극장용으로 제작된 영상저작물을 오로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게시 중인 사실이 인정됨(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비록 전체 분량을 제공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절반이 넘는 분량을 제공하고 있으며 개봉한 지 8년이 넘은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조회 수가 증가하는 사정을 고려할 때 합법 시장의 수요를 상당 부분 대체하고 있는 점이 분명하므로, 해당 부분의 중요성이 낮다거나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따라서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더불어 심의대상 채널에서 동일한 형태의 불법복제물이 다수 확인되는바, 일반적인 단순 불법복제물의 복제·전송 사안과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임. 따라서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시정권고의 요건이 충족하였으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2번~32번은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33번~37번은 2명의 민원인이 실명으로 신고한 건임. 블로그 및 웹하드 사이트에서 다수의 만화 및 출판 불법복제물을 각 제공 중인 사안임. 총 게시물 수는 5건임.

(순번 33번 채증 자료를 보여주면서)해당 저작물의 1화~6화를 30 포인트에 판매 중에 있으며, 네이버 시리즈에서 한 화당 200원에 대여, 300원에 소장 가능함.

불법복제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합법 시장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D 위원: 불법복제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 중인 점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임.
- C, B, A 위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33번~37번은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순번 38번~1826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총 게시물 수는 3,004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음악, 만화, 게임, 출판, SW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음악 '라일락'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59번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음악 '라일락'을 50 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해당 저작물은 2021. 3. 25.에 발매한 국내 최신 음악으로, 멜론, 네이버 바이브(VIBE) 등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멤버십 유료 가입 후 무제한으로 듣기 가능함. 심의대상 게시물에서는 해당 저작물을 포함하여 총 10곡을 제공하고 있음.
(영화 '더 길티'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407번은 모바일 웹하드에서 영화 '더 길티'를 540 캐시에 판매 중인 사안임. 영화 전

체 분량인 약 89분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음. 해당 저작물은 2021. 10. 1.에 공개된 해외 영화이며, 넷플릭스에서 유료 회원 가입 후 시청 가능함.

(방송 '바퀴 달린 집'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639번은 모바일 웹하드에서 방송 '바퀴 달린 집'을 88 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해당 저작물은 2021. 9. 27.에 방영한 3화로, 약 79분의 전체 분량을 파일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 중임. 티빙 등 OTT 서비스에서 유료 회원 가입 후 시청 가능하며, 네이버 시리즈온에서 한 화당 2,200원에 대여 가능함.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순번 38번~1826번은 모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38번~1826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건번호 제2021-138660호~140485호(순번 1번~1826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

는 것으로 가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은 14쪽부터 18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제2021-14676호~14786호(순번 190번~300번)는 제외하고, 안전번호 제2021-14487호~14675호(순번 1~189번), 안전번호 제2021-14787호~14842호(순번 301~356번)에 대하여 구글 검색결과 제한 요청을 가결함”

4. 폐회 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이 제27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1년 제27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10. 20.

분과위원장 최승수

위원 김경숙

위원 노정동

위원 박성호